

[별표 1] <개정 2007.12.28>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 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 철·공항·관개수로·발전 (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 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 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과 기둥(또는 벽)이 있 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 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 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4. 산업·환경설 비 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 산시설, 환경오염을 제 거·감축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 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 리설비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에 따라 수목원·공원·녹 지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	수목원·공원·숲 등의 조 성공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실내건축공 사업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 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 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 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2.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3.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폴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뿔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미장뿔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뿔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및 테라코타타일공사 등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4.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5.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뽐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6.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는 공사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7.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천정·건식벽체·강재벽체·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설치하는 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호울타리·웬스·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음벽·방음터널·교량안전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굴뚝·탱크·수문설치·서터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도어·사다리·철재프레임·난간·계단 등의 공사
8.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온실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지붕·판금공사: 기와·슬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싱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흡통공사 등
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샌드위치판넬·ALC판넬·PC판넬·세라믹판넬·알루미늄 복합판넬·사이딩판넬·클린복합판넬·시멘트보드판넬·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

		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10. 기계설비 공사업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 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 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 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 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 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 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 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 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 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 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 공사, 지열냉·난방 기기 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 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 내급배수관개량·세척 공 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 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 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11.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 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 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 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 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 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 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

	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공사를 제외한다)및 세척·갱생공사 등
12.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13. 철도·궤도공사업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 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14.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15. 수중공사업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
16.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뽑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

		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17.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18. 강구조물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19. 철강재설치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설치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설치공사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20. 삭도설치공사업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21. 준설공사 업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 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 의 준설공사 등
22. 승강기설 치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 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 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 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 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 공사 등
23. 가스시설 시공업(제1 종)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 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 설·집단공급시설·저장 소시설의 설치·변경공 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 스사용시설의 설치·변 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의 설치·변경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24. 가스시설 시공업(제2 종)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 스사용시설 외의 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 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 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 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5. 가스시설 시공업(제3 종)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아래의공사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 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 설 중 온수보일러·온 수기 및 그 부대시설 의 설치·변경공사
26. 난방시공 업(제1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에 따른 특정열 사용기자재 중 강철재 보일러·주철재보일러·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축열식 전 기보일러·태양열 집열 기·1종압력용기·2종압 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 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27. 난방시공 업(제2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 양열집열기·용량 5만 kcal/h 이하의 온수보 일러·구멍탄용 온수보

		일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28. 난방시공업 (제3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29.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종 중 1개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	--	--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의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목공

사업 또는 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본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3. 건설업자는 해당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
4.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
5.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할 수 있다.
6. 난방시공업 제1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7. 난방시공업 제2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8.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